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경** 제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계획

2021. 8. 27.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추진배경	1
2. 운영개요	2
3. 운영계획	2
① 모임·만남·친목	2
② 행사·집회·시험	5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④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5
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6
⑥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10
⑦ 취약시설 방역관리	10
⑧ 국·공립 시설	11
⑨ 직장근무(사업장)	11
⑩ 입도객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11
⑪ 도내 해수욕장 폐장(연장)	12
⑫ 공용공간 실내흡연실 방역수칙(의무화)	12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13
5. 지도·점검체계	14
▶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15
▶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17
▶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7
▶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18
▶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19
▶ 참고6. 감염병예방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 계획

-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전국적 확산세 지속 상황 발생
- 제주지역 주간 평균 환자 수가 8.26(목)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초과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필요

1 추진배경

- (전국) 수도권 정체기 후 다시 확진자 증가, 비수도권도 지속 증가

<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

지역		8.20 (금)	8.21 (토)	8.22 (일)	8.23 (월)	8.24 (화)	8.25 (수)	8.26 (목)	평균(주)
국 내	전국	1,812	1,588	1,370	1,469	2,113	1,829	1,811	1,713.1
	수도권 (비중)	1,192 (65.8)	1,069 (67.3)	847 (61.8)	959 (65.3)	1,368 (64.7)	1,168 (63.9)	1,194 (65.9)	1,113.9 (65.0)
	비수도권 (비중)	620 (34.2)	519 (32.7)	523 (38.2)	510 (34.7)	745 (35.3)	661 (36.1)	617 (34.1)	599.3 (35.0)
해외		65	38	47	39	41	53	30	44.7

- (제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주간 평균 환자 수는 8.26.(목)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여전히 초과
 -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 종합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

일자	8.20 (금)	8.21 (토)	8.22 (일)	8.23 (월)	8.24 (화)	8.25 (수)	8.26 (목)	일주일간 발생 누계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확진자	52	35	32	30	27	30	23	229	32.7명

→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필요**

2 | 운영개요

☞ 4차 대유행 확산 차단과 방역취약시설 강화조치를 반영한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단계조정) **현행 4단계 연장**
- (처분기간) ' **21. 8. 30(월) 0시부터 ~ '21. 9. 12(일) 24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단 18시~익일 05시 2명까지 모임 허용),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적용 등

3 | 운영계획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외출과 모임 자제, 사회적 접촉 최소화 필요

1. 모임.만남.친목(개편안 4단계 적용)

- (적용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아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 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경우도 사적모임 기준 적용
- * 예방접종자·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적용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 포함

- (제한인원) '4명까지 모임 가능 (단, 18시~익일 05시까지 2명까지 모임 가능)
- (예외사항)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면적의 4㎡당 1명 및 1일기준(누적) 최대 49명
-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적용(풋살장, 조기축구 등 포함)
(05시~18시까지 4명, 18시~익일 05시까지 2명까지 가능)
- ④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시~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행사·집회·시험(개편안 4단계 적용)

① 행사 금지,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별도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 * 대규모 스포츠 행사(권역간 이동 포함하는 체육대회) 개최 금지

- ②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부스당 최대 2명(PCR검사 음성확인자, 예방접종 완료자), 사전 예약제 운영
- ③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등
- 학술행사는 전체 50인 미만으로 허용(인원 나누기 금지), 식사 금지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⑤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최대 수용인원 5천명)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공연 목적 외 시설(임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관객 수 2천명, 4단계에서는 개최 금지
 -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 ⑥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⑦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 공무 및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 동반행사 금지(4단계)
- ⑧ 예방접종 완료자도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 포함(인센티브 미적용)
- (위반 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적모임 및 행사 등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3. 마스크 착용 의무화(1단계부터 적용 중)

- 휴가철 관광객 몰림 현상,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
 - 2021. 7. 1. ~ 별도 해제시 까지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li style="padding-left: 20px;">*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를 적용하지 않음	

4.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

- (적용대상) 버스, 택시, 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 섭취(물, 무알콜 제외) 금지

5.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개편안 4단계 대비 강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중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10㎡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식당·카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집합금지, 2, 3그룹 22시 제한 *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 식당·카페 21시~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 21시~ 익일 05시까지 취식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강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21.7.15~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포함) 집합금지
	1그룹(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펍게임장 		
	2그룹(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 노래(코인)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유원시설,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PC방 		
	기타시설(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경기(관람)장 ▲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숙박시설 ▲ 파티룸 ▲ 도서관 ▲ 키즈카페 ▲ 돌잔치전문점 ▲ 전시회·박람회 ▲ 마사지업소·안마소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종교시설 ▲ 이·미용업 		
고위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 물류센터 			

- 집단감염 발생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PCR 검사(2주 1회) 의무화(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해당시설 :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PC방·대규모점포 (3,000㎡이상) * 단, 노래연습장·목욕장업은 최초 2주 1회
 - 검사대상 :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등 포함)
- 목욕장업 정기이용권 발급(호텔 목욕장업 포함) 금지('21.9.1부터, 4단계지역)
-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포함(인센티브 미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요약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집합금지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집합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펍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집합금지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노래 (코인포함)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집합금지(강화) ■ 종사자 PCR 검사(최초 2주 1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종사자 PCR 검사(최초 2주 1회)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 수영장은 2시 운영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전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종사자 PCR검사(2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가속형) 입사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띄우기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타디오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4㎡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x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x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관측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건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종사자 PCR 검사(2주 1회)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샤워실 운영금지(3~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
<p>※ 단,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조정</p>				

6.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개편안 4단계 적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최대 99명)내 제한적 허용,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
 -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 (예시) 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등
 - 예방접종 완료자도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에 포함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도 운영 불가

7. 취약시설 방역관리 (기존 유지)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에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하고, 소관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류 >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시설) 감염취약 환경, 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예방 대책 추진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 제외
 - 외부에서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 면회 허용**
 - *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1~3단계 접촉 면회(1인실 또는 별도 공간 확보, 보호용구 착용 등) 허용.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금지
- **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하에 접촉 면회 가능 ⇒ 요건 :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및 24시간 내 PCR 검사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필요

8. 국·공립시설 (기존 유지)

- 동일 업종·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 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9. 직장근무(사업장) (기존 유지)

- 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적극 권고
- 직장내 집단 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
 - 행사 연기 및 비대면 추진, 회식·모임 방역수칙 준수 등

10.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기존 유지)

- 대상 : 증상 관계없이 도외 지역에서 입도하는 도민 및 관광객
- 기간 : 별도 지정 시까지
- 내용
 - (도민)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 검사
 - (관광객) 입도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반드시 검사결과 확인 후 입도
- * 입도 후 확진 시 구상권 청구 검토

11. 도내 해수욕장 폐장(연장)

- 일시폐장 연장기간 : '21. 8. 30(월) ~ '21. 8. 31(화) 까지
- 적용대상 : 제주도내 지정해수욕장 12개소
 - 제주시(8개소) : 협재, 금능, 괄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 서귀포시(4개소) :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 주요내용 :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중단, 샤워탈의장 운영중단, 계절음식점 영업중단, 수상안전관리·방역단속 지속

< 방역수칙 준수사항 >

- 마스크 항시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준수 (05시~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22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이호테우) 지속유지('21.7.26. ~ 해제 시)

※ 백사장 출입 및 물놀이는 가능하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강력단속 예정

12. 공용공간 실내흡연실 방역수칙(의무화) (기존 유지)

- 공용 공간 중 시설 내 설치된 실내흡연실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 방역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2m 간격표시(바닥) 부착 안내(권고)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 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집합제한은 개별적인 시설, 업체(단체), 장소 등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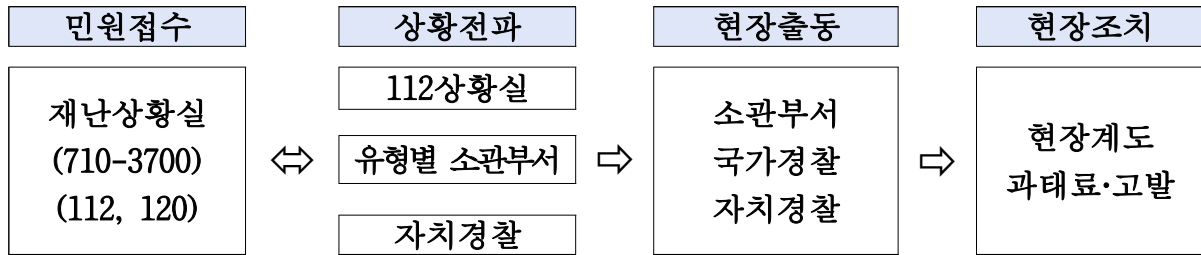
- ☞ 방역지침 1차 위반시에도 운영중지(영업정지) 행정조치 처분가능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한 시행규칙 개정(7.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42조, 별표10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구 분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이상 위반
개정전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 행정처분) ①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②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페널티 강화) 재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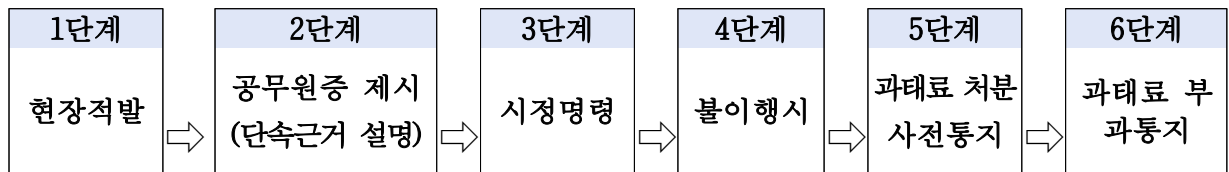
5 |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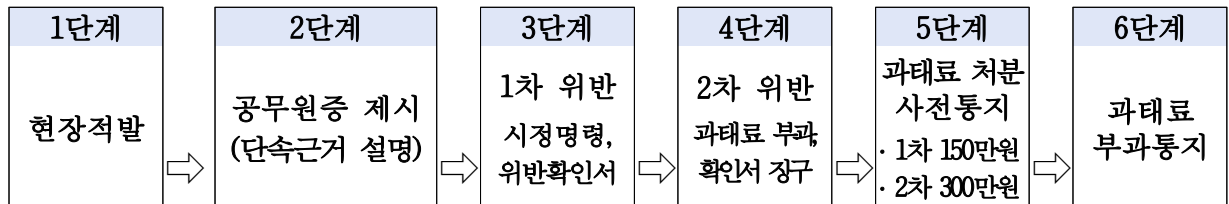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3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 단,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유형별 소관부서

-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적발결과 소관부서 통보)

▶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참고1 |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구 분	개편안 4단계('21.8.30 ~ 9.12)	개편안 4단계('21.8.23 ~ 8.29)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모임 가능	▶ 4명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모임 가능
행사 등	▶ 행사 금지,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 행사 금지,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 집합금지
홀덤펍·홀덤펍 게임장	▶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식당·카페	▶ 21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가능(21시까지) ▶ 21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 21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가능(21시까지) ▶ 21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목욕장업	▶ 22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종사자 PCR 검사 실시(최초 2주 1회) ▶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21.9.1~)	▶ 22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종사자 PCR 검사 실시(최초 2주 1회)
실내 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교습 소·직업훈련 기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종사자 PCR 검사(2주 1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종사자 PCR 검사(2주 1회)
영화관공연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 스테디 카페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수용인원 5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수용인원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수용인원 30%
오락실멀티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 22시 이후 운영 제한(300㎡ 이상)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사자 PCR 검사 실시(2주 1회)	▶ 22시 이후 운영 제한(300㎡ 이상)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구 분	개편안 4단계(21.8.30 ~ 9.12)	개편안 4단계(21.8.23 ~ 8.29)
카지노 (내국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수용인원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수용인원 30%
PC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 음식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 무관중 경기	▶ 무관중 경기
경륜·경정·경마장	▶ 무관중 경기	▶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화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사회복지시설	▶ 방문면회 금지 ▶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 방문면회 금지 ▶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국공립시설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편의점	▶ 21시 이후 취식금지 ▶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 21시 이후 취식금지 ▶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흡연실	▶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참고2 |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시설(분야)별 방역수칙은 [붙임1 '중앙사고수습본부/제주특별자치도' 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5인부터(또는 3인)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음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 및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p>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p>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p>기타 불가피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잠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처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p>마스크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17	공연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37	버스터미널, 정류장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물과	- 해양수산물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물과	해양수산물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요트	해양산업과	해양수산물과	해양수산물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물과	해양수산물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물과 읍면동	해양수산물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편의점	방역대응과	-	-
55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	-
56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7	그 외 시설 및 활동 (마스크 05시~18시 4인까지, 18시~05시까지 2명 가능 등)	주간은 읍면동 및 자치경찰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현장 조치		
58	사적 모임관련 관리 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9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